**내부제보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사내의 부정행위의 근절을 포함하여 기업의 체질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내부제보를 장려하고, 제보 방법, 제보자 보호, 제보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내부제보 사항)

1) 기업가치 증대,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건의사항

2)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요소나 제도의 개선사항

3) 윤리경영에 위배되거나 건전한 기업문화에 저촉되는 사항

제3조 (제보 방법)

1)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제보내용 및 관련 증거를 제출한다. 제보자의 신분 노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하다.

2) 홈페이지 웹에 의한 접수를 원칙으로 하지만, 제보자의 선택에 의해 전화,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보도 가능하다

제4조 (제보자 보호)

1. 익명 처리

1) 제보자 및 제보내용은 대외비로 처리하며, 제보자 및 제보내용을 알려고 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2) 제보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제보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알리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3) 제보내용을 처리하는 과정에 제보내용 조사에 협조하는 자도 상기의 보호를 받는다

2. 불이익 금지

1)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며, 본인에 대한 자진제보의 경우 징계처분의 감경이나 면제될 수 있다

2) 피제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제보로 인한 불이익을 발생한 경우 제보자는 즉시 윤리경영 담당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3) 제보자에게 불이익 행위를 한 자는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제보자의 행동 수칙)

1) 사실 관계만으로도 제보가 가능하나, 가능한 명확인 근거와 증빙을 기초로 제보한다

2) 회사의 가치를 지키고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일인지 판단한다

3) 개인적인 감정이나 음해성 제조는 지양하며,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 처리 및 결과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